



고용노동부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

수신 전국 서택련 택시노동조합연맹 [REDACTED] 귀하
(경유)

제목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민원 처리 결과 회신

1. 관련 :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요청(2022. 3. 17.)
2. 귀하가 우리 지청에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 위반 임금협약 조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,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(관련법령)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

위반 임금협약 조항

- 제4조(근로시간)제1항
- 제15조(장려수당)
- 제18-1조(성과급의 지급 제한 조건)
- 제20조(상여금의 지급 제한 조건)제3항 및 제4항

나. (관련법령)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60조제5항

위반 임금협약 조항

- 제11조(기본급 인정기준)

다. (관련법령)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

위반 임금협약 조항

- 제4조(근로시간)제1항
- 제14조(승무수당)
- 제15조(장려수당)
- 제20조(상여금의 지급 제한 조건)제3항 및 제4항

라. (관련법령)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

위반 임금협약 조항

- 제18-1조(성과급의 지급 제한 조건)
- 제20조(상여금의 지급 제한 조건)제4항

끝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



근로감독관 [redacted] 과장 [redacted] 전결 2022. 7. 19.

협조자

시행 [redacted] (2022. 7. 19.) 접수

우 057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(가락동 78 아이티벤처타워) / 동관 10층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[redacted] 팩스번호 [redacted] / chony@korea.kr / 비공개(6)